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대한 이익제기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구청 부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여 면접 심사 결과 탈락하는 과정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방문 접수만 허용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응시표 미지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점, 응시자 1명당 3분 정도의 짧은 면접 시간으로 미루어봤을 때 합격자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등 불공정한 채용 과정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채용 공고를 통하여 방문 접수만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응시자가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았지만, 기 제출받은 서류로 본인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 후 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하였고, 응시자 전원은 3~4분 정도로 균등하게 면접 진행하였음.

□ 사실관계

- 부서 채용 공고 후 접수 기간에 5명이 방문 접수하였으며 5명 모두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한 결과, 현재 근무자인 응시자가 최종 합격됨.
- 채용 공고문에 의하여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접수는 제외하고 방문 접수(대리 접수 가능)만을 허용하였으며, 접수시 응시원서에 접수날짜가 표기된 접수 도장을 날인하였음.
-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신분증과 이미 제출받은 서류로 본인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

□ 판단 및 결론

- 다른 기관의 각종 기간제 근로자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도 방문 접수만 가능한 사례가 많은 점, 접수 방법 제한을 이유로 접수하지 못한 응시자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방문 접수만 허용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제한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신분증과 응시표 지참은 본인 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 확인 등 채용 사무 추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분증과 제출 서류로 본인 여부 및 응시번호 등을 확인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 행위를 채용 절차의 부당함을 다룰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면접 시간이 1인당 3분 정도로 짧았더라도 응시자 간 균등한 면접 시간으로 진행하였다면 면접 시간을 짧게 진행한 것이 부당한 면접 시험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이 현재 근무자를 합격자로 정해 놓고 시행하였다는 개인적인 의심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면접시험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응시표 분실 등의 사유로 미지참 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응시표를 재발급하거나 임시 응시표를 발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조치 요령을 보완할 필요성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심의안내)

□ 민원 제목 : ○○동 신축공사 피해 원상복구 요청

□ 신청 취지

- 민원인은 ○○동 신축공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거주지 담장 및 건물 균열이 발생하여 2023. 3.경 공사 중지 요청 민원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구청은 민원인 거주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2024. 4. 4. '사설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요청', 2024. 5. 28.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안내 및 유지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 거주지 담장 균열 및 대문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2025. 12. 19. '민원사항 통지 및 민원 해소 협조 요청' 공문을 ○○동 ○○○ 건축주 및 관계자들에게 발송하여 민원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사실관계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이미 2차례 ombudsman에서 답변을 했고, ombudsman에서 한 1차 답변은 구청이 민원인과 ○○동 ○○○ 건축주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취지의 답변이었으며, 2차 답변은 '○○동 ○○○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구청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

□ 관계 법령 등

- 건축법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 및 재정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96조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8조에서 재정을 한 후 재정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판단 및 결론

- 확인 결과 민원인 주택 인접한 건물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에 균열이 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주택의 기단 부위에도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균열이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신축과정에서 발견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균열의 정도를 보았을 때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음.
- 구청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없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에 강제력 및 집행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이나 재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담당 부서에서는 균열위험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부서는 민원인에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또는 재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만일 분쟁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하였던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해야할 것임.